



제432회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수리규정 삭제 〉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38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복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의 수리규정 삭제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민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5.

다. 회 부 일 : 2025. 12.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함)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OTT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만약 현행처럼 이용약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지속 운영될 경우, 유료방송은 신규 상품 출시가 지연되어 시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품·서비스 출시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삭제 등).

Ⅲ. 검토의견

1.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의 수리규정 삭제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검토 및 신고 수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삭제 및 제108조제1항제12호).

현행	개정안
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①·② (생략)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 ④ ~ ⑧ (생략)	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1의2. (생략)	제108조(과태료) ① ----- ----- ----- -----. 1. ~ 11의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2. 제7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2. 제77조제1항----- ----- <u>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u> ----- ----- ----- -----
12의2. ~ 28. (생략)	12의2. ~ 2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함)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신고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수리하도록 하여¹⁾, 유료방송의 이용약관에 관한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고 있음.

1) 「방송법」

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①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2. 제8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을 것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이용약관의 신고 시 ①상품별 이용요금, ②이용조건, ③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④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 사유 등의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신고 수리 기한을 7일로 정하고 있음²⁾.
- 이는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효력 발생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료방송사업자의 일방적인 가격 변경 또는 채널 개편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신고/등록제³⁾를 적용받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2) 「방송법」

제60조의6(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상품별 이용요금
 2. 이용조건
 3.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OTT)는 유료방송과 달리 이용요금의 설계 관련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제 비대칭 속에서 국내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던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024년 상반기에 처음 감소한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SO와 위성방송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가입자 수 및 전기 대비 증감률(단위: 단말장치·단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전체 가입자	36,347,495	36,390,365	36,384,610	36,364,646	36,226,100
IPTV (증감률)	20,814,402 (1.21%)	21,003,615 (0.91%)	21,149,096 (0.69%)	21,310,251 (0.76%)	21,414,521 (0.49%)
SO (증감률)	12,631,281 (-0.77%)	12,541,500 (-0.71%)	12,412,496 (-1.03%)	12,273,100 (-1.12%)	12,091,056 (-1.48%)
위성방송 (증감률)	2,901,812 (-1.74%)	2,845,250 (-1.95%)	2,823,018 (-0.78%)	2,781,295 (-1.48%)	2,720,523 (-2.19%)
증감폭 (증감률)	99,098 (0.27%)	42,870 (0.12%)	-5,755 (-0.02%)	-19,964 (-0.05%)	-138,546 (-0.38%)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5. 11. 24.)

- 이처럼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OTT와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 간 규제 비대칭 문제에 대한 개선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0년 6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글로벌 OTT와의 규제 격차로 인한 국내 업계

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규제원칙’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편성 등 규제 개선을 밝힌 바 있음.

- 2024년 3월 대통령 직속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서는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재)허가·승인시 부관 부가 원칙의 명시, 소유제한 및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신고에 관한 수리규정을 삭제하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유료방송 사업자에게도 OTT 사업자와 같이 자율적인 요금, 채널 등 이용조건 개편을 통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플랫폼 간 경쟁 환경을 보다 중립적으로 조정하고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신고에 관한 수리규정을 삭제하면서 ①최소채널상품, ②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의 승인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 등 가격 민감도가 높고 OTT로의 전환도 쉽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시청권 보호 및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이용약관에 대한 사전적 통

제 기능의 약화 문제와 이와 관련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같이 최소채널상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신고 수리 규정이 삭제될 경우 유료방송사업자가 승인 대상이 아닌 영역에서 약관 구성의 복잡화, 요금 외 조건(채널, 약정기간, 위약금, 부가서비스 등)의 잦은 변경 등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적 수단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한 개정안이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유료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개정안에 따를 경우 ①유료방송사의 잦은 채널 변경, 채널 종료 관련 이용자 미고지 등을 사전 제어할 수단이 부재하게 되고, ②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 간 콘텐츠 대가 협상 과정에서도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방적인 협상 우위를 지니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료방송의 채널송출 안정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료방송의 경쟁력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할 예정이라고 함.

○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 여부 및 방향에 대하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료방송 이용약관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여 글로벌 OTT와의 규제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최소한의 사전 통제 수단의 부재로 인해 시청자의 권익 보호, 유료방송의 채널송출 안정성 및 유료방송사-콘텐츠사 간 협상 균형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유료방송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한국IPTV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SO협의회)는 현행 이용약관 수리제도는 경미한 약관 변경에도 행정절차가 수반되어 유료방송사업자의 신규 상품·서비스 출시 지연 및 시장 대응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해왔으므로,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서비스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는 전반적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자율성 제고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나, 제도 전환이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콘텐츠 산업 전반의 균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규제 완화 이전에 협상력이 약한 중소 PP의 보호망과 소비자 선택권 보호

대책을 먼저 확립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절차적 규제완화로 인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에 의한 콘텐츠 가치의 저평가 및 무단 콘텐츠 이용이 정당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콘텐츠의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법제화하여 PP의 정당한 대가 산정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6